

「대학의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사업 협약서

2020년도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인평원”이라 한다)과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명 : 다문화 동백(同絢) 프로젝트 (유형: II 컨소시엄형)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1. 1월 30일
- 시비지원금 : 금 오천만원정(₩ 50,000,000)
- 대응자금 : 금 일천구백팔십만원정(₩ 19,800,000)
- 협약당사자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사업총괄책임자 신선종)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인평원”과 “대학”이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수행을 위해 권리·의무·책임관계를 명확히하고, 제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협약서와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와 동일하다.



제3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의 수행) “대학”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관련 규정·지침 등에 따라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급) “인평원”은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예산이나 자금사정,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관리) ① “대학”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사업비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 양도 또는 사업의 재교부 등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조례·규칙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① “대학”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은 “인평원”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내용을 보완하거나 시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협약기간 만료 후 지정한 기한까지 이 사업과 관련된 정산보고서를 “인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정산금을 “인평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만료 전에 “인평원”이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인평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결과 사업비가 부당하게 지출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지도감독) ① “인평원”은 “대학”과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회계서류 포함)·시설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인평원”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인평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대학”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 후 그 결과를 “인평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인평원”과 “대학”은 서로 협의하여 이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인평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대학”이 중대한 협약사항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할 때
- 나. “대학”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다. “대학”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사업수행이 자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학”은 이미 수령한 지원금 중 실제로 이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인평원”에 자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대학”은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인평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④ “인평원”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각종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 및 사업수행 관계자 등이 이 협약의 내용 또는 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평원”은 지원한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의성실 및 기밀유지) ① “인평원”과 “대학”은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이 사업의 수행 과정 중 “인평원”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수행 내용에 관하여 “인평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평원”과 “대학”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각종 정보를 이 협약의 이행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제13조(책임) ① “대학”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학”에 있다.
② “대학”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평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대학”은 “인평원”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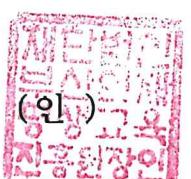
- 제14조(기타) ① “대학”과 “인평원”은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이 사업이 “인평원”의 지역사회 상생·협력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 ②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고자 요청한 공공기관 등에 “대학”은 사업성과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평원”과 “대학”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인평원”의 해석에 따른다.
- ②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인평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16조(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 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인평원”과 “대학”은 ~~직인~~을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7월 09일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영삼 (인)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정용각 (인)

